한-싱가포르 FTA 개관

·

**#FTA체결의 의의**

@개념 자유무역협정(FTA)

-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(締約相對國)과 관세의 철폐,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,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」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·협정을 말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항제1호).

체약상대국

-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(국가연합·경제공동체 또 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)를 말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).

@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정 자유무역협정의 추진

- 자유무역협정 추진위원회

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자유무역협정 추 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함)를 두며,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[「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3조 및 제4조(대통령훈령 제288호, 2011. 7. 6. 발령·시행)].

√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

√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

√ 자유무역협정 협상안

√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

√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

√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자유무역협정 민간자문회의

·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 취결과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 민간 자문회의(이하 “민간자문회의”라 함)를 두며, 다음 사항에 관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에게 자문을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9조).

√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

√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

√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

√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

√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협상 전 절차

- 기본전략의 수립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무역 협정 추진에 관해 기 본전략을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 전략에 대한 심의·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3조).

-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 의·의결된 기본전략에 따라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 정」 제14조).

·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 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 뢰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 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4조).

-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심의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에 대 한 검토 결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 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5조).

-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·의결을 대외경제장 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6 조 본문).

- 협상 전 논의 개시 등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·의결을 대외 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,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).

√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및 범위

√ 자유무역협정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

√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참고가 되는 양국의 제도

√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사항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 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

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7조제2항).

협상절차

- 협상대표단의 구성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 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「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과 권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 성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8조제1항).

- 협상안의 심의 등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추진위원 회 회의를 소집해 중요 협상안에 대해 심의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심의·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 한 절차규정」 제19조제1항).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심의 전에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 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9조제2항).

- 협상 개시

· 협상대표단은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합니다(「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18조제1항).

- 협상의 진행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 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·지휘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」 제20조제1항).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 고,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·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(「자유무 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0조제2항).

- 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1조제1항).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(「자유무 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1조제2항).

- 가서명

· 수석정부대표는 「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협상안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정문에 가서명 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 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2조).

협상 후 절차

- 협상결과 보고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타결된 경우 국회에 협상결과(이하 “자유무역협정 안”이라 함)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(「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3조).

- 보완대책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하고, 보 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·조정 을 요청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4조).

-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

· 외교통상부장관은 「대한민국 헌법」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유무역협정안에 서명한 후 국회에 자유무역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 정」 제25조제1항).

· 외교통상부장관은 국회에 자유무역협정안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장에게 보완대책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(「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5조제2항).

- 시행준비

·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정된 관세철폐계획·원산지기준 등 협정시행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이 해당사자들이 협정 발효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(「자유무 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」 제26조).

@한-싱가포르 FTA의 의의

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

-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,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(한·싱가 포르 FTA의 주요내용, 외교통상부).

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

-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,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은 FTA를 통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(한·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, 외교통상부).

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, 투자 확대 및 원활화

-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(이하 “한·싱가포르 FTA”라 한다)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, 서비스, 투자, 정부조달, 지적재 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, 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(한·싱가포르 FTA 의 주요내용, 외교통상부).

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

- 한·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 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(한·싱가 포르 FTA의 주요내용, 외교통상부).

@한-싱가포르 FTA의 목적

한·싱가포르 FTA는 내국민 대우·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이 협정의 원칙 과 규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대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(「대한민국 정부와 싱가 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.2조).

·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·촉진 및 투자 증대

·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

·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구축하 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

·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 구축

· 한·싱가포르 FTA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

· 한·싱가포르 FTA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간의 협력 제고의 틀 구축

@한-싱가포르 FTA의 체결과정 및 효력 체결과정

- 1999년 9월: APEC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 제안

- 한·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 발족

· 2002년 11월: 시드니 WTO 각료회의에서 한·싱가포르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“산·관·학 공동연구회”발족 합의

· 2003년 3월: 제1차 공동연구회 개최(서울)

· 2003년 7월: 제2차 공동연구회 개최(싱가포르)

· 2003년 9월: 제3차 공동연구회 개최(서울)

· 2003년 10월: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

- 협상 개시

· 2003년 10월: 한·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

· 2004년 1월: 제1차 협상 개최(싱가포르)

· 2004년 3월: 제2차 협상 개최(서울)

· 2004년 5월: 제3차 협상 개최(싱가포르)

· 2004년 7월: 제4차 협상 개최(제주도)

· 2004년 9월: 실무협의 개최(방콕)

· 2004년 10월: 제5차 협상 개최(싱가포르)

· 2004년 10월: 실무협의 개최(방콕)

· 2004년 11월: 실무협의(Teleconference)

· 2004년 11월: 칠레 APEC 정상회담 및 라오스 ASEAN+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·싱 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쟁점 협의

- 타결 선언

· 2004년 11월: 라오스 ASEAN+3 정상회담 시 한·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

- 가서명 및 정식서명

· 2005년 4월: 협정문 가서명(싱가포르)

· 2005년 8월 4일: 협정문 정식서명(서울)

- 발효

· 2005년 12월 1일: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

· 2006년 3월 2일: 발효

효력

- 발효

· 한·싱가포르 FTA는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보 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합니다(「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

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2.5조).

- 종료

·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한·싱가포르 FTA 를 종료할 수 있으며, 이런 종료는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합니다(「대한민국 정 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2.6조).

한·싱가포르 FTA의 구성

※ 한·싱가포르 FTA 협정문 전문(영문)

※ 한·싱가포르 FTA 협정문 전문(국문)

- 한·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서문, 22장의 본문, 관련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,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,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, 무역구제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,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, 국경간 서비스 무역, 투자, 전기통신, 금융서비스, 기 업인의 일시입국, 전자상거래, 경쟁, 정부조달, 지적재산권, 협력, 투명성, 분쟁해결 등 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(한·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, 외 교통상부).

-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계획, 품목별 원산지 규칙, 원산지증명서 서 식,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(한·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, 외교통상부).

**#FTA 일반사항**

\*한-싱가포르 FTA는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기업 인의 일시 입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 각 당사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한-싱가 포르 FTA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.

@개념 ㆍ협정

-협정이란 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을 말한다.

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장)

ㆍ국민

-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」 제2장)

대한민국: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국내법에서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 싱가포르: 싱가포르 헌법 및 국내법의 의미에서 국민인 자

ㆍ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

-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「관세법」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, 부(Section)의 주(Notes), 류(Chapter)의 주(Notes)를 말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」 제2장)

-HS Code(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tem Code)

ㆍ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(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: HS협약)에 따라 수출입물 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코드를 말한다. (관세청 통관정보의 문)

ㆍHS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, 7자리부터는 각 나라 에서 6단위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, 이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, HS of Korea)라고 한다.

ㆍ영역

-대한민국

그 주권하에 있는 육지, 해양 및 영공,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 역을 말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장)

-싱가포르

국제법에 따른 그 육지영역 및 영공, 내수 및 영해,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이 그 지 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영해 밖의 해양지역을 말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장)

ㆍ접촉선

-각 당사국은 한-싱가포르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2.2조제1항)

-한-싱가포르 FTA의 목적상, 당사국에 의하거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22.2조제2항)

-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」 제22.2조제3항)

대한민국: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국 또는 그 승계기관 싱가포르: 통산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

@기업인의 일시 입국 ㆍ개념

-기업인

기업인이란, 상품무역,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 민을 말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1조가 호)

-기업인 방문자

ㆍ기업인 방문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다음의 해당하는 국민을 말한다. (「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1조나호)

√서비스판매자

√단기 서비스 공급자

√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GAT)상의 양허에 기업 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 의된 관리자, 임원 또는 전문자로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 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

√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려는 자

-일시입국

일시입국이란 영주할 의사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다른 당사국의 기 업인이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」 제13.1조마호)

ㆍ일반원칙

-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2조제1항)

√양 당사국간의 특혜적 무역관계,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일시입국의 촉진

√일시입국을 위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와 국 경의 안전보장

√당사국의 영토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인 고용의 보호필요성

-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은 국적 또는 시민권, 영구적인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 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2조제2항)

-일시입국자격의 개별적용

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과 부속서 13A 및 부록 13A,1의 규정을 조건으로, 공중보건,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조치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

업인의 일시입국을 다르게 허용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」 제13.4조제1항)

ㆍ예외

-입국서류의 발급거절

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, 그 기업 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4조제2항)

√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

√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자의 고용

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4조제3항)

√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

√다른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

ㆍ일시 입국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범위

-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일시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3 조제1항)

-특히 한-싱가포르 FTA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ㅜㅅ행을 부당하게 침 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히 적용하여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 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3조제1항)\

-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3조제3 항)

√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√그 영역 안으로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 또는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치

√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

-다만, 당사국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아 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3조제3항)

사증 또는 고용의 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한-싱가포르 FTA에 따라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(「대한 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3.3조제3항 단서)

@경쟁 ㆍ목적

-경쟁에 관한 규정은 공정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하여 한-싱가포 르 FTA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5.1조제1항)

ㆍ경쟁의 촉진 및 중립

-촉진

각 당사국은 그 영역 안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 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하여 경쟁을 촉진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 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5.2조제1항)

-중립

각 당사국은 자국정부가 정부소유 사업자에게 단순히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활동의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5.4조제1항)

이러한 조치는 정부소유사업자의 사업활동에만 적용되고, 비사업적 및 비상업적 활동

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」 제15.4조제2항)

ㆍ경쟁의 협의 및 협력

-협의

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,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 향을 미치는 특정 반경쟁적 관행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안 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」 제15.5조제1항)

각 당사국은 경쟁과 관련된 협의 중 협의주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된 논의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(「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5.5조제2항)

경쟁에 대한 상호협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된 정보 또는 서류는 비밀로 유지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5.5조제3 항)

-협력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하여 경쟁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」 제15.6조제1항)

양 당사국은 싱가포르의 일반적 경쟁법 발효 후 6개월 내에 협력 및 조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체결하기로 협의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5.6조제2항)

@투명성

ㆍ투명성확보를 위한 방법

-공표

각 당사국은 한-싱가포르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자국의 법률, 규정, 절차 및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도록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과 타방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보장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 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9.2조제1항)

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률,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당사국이 채 택하겠다고 제안한 법률, 규정, 절차 그리고 행정결정을 사전에 공표한다. (「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9.2조제2항가호)

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률,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과 타방당사국에게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 공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9.2조제2항나 호)

-정보제공

각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 내에서 해당당사국이 한-싱가포르 FTA의 운용에 중대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에게 통보를 합니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 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9.3조제1항)

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, 다른 당사국이 조치 이전에 통보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질의에 대하 여 답변하여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 19.3조제2항)

조치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통보는 이 조치가 한-싱가포르 FTA와 합치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9.3조제3항)

조치에 대한 통보,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제공되어

야 한다. (「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제19.3조제4항)

**#FTA관련 법제**

\*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제는 다음과 같다.

@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

-이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, 징수 및 감면,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「관세법」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. 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조)

@「관세법」 ㆍ국제협력관세

-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. (「관세법」 제73조제1항)

-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. (「관세법」 제73조제2항)

@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ㆍ투자대상

-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(설립 중인 법인 포함)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5조제1항)

-외국인(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한함)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6조제1항)

@「외국인토지법」 ㆍ투자대상

-「외국인토지법」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한다. (「외국인토지법」 제1조)

@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」 ㆍ정부조달

-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」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제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(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정」 제1조)